

## 택시운송사업 법규준수 사항 공고

| 준수 사항   | 관련법 및 처분내역   |
|---|--|
| <p>○ 운수종사자 복장 준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택시운송사업자는 인천광역시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장 준수사항 및 금지복장 관련 이행 여부를 운행 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p>○ 인천광역시 복장 지정사항</p> <p><b>1. 금지복장</b></p> <p><b>상의:</b> ①폴티, 소매 없는 셔츠, 러닝셔츠, ②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, ③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</p> <p><b>하의:</b> ①반바지, 칠부바지, 슈리닝,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</p> <p><b>모자:</b> ①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, ②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</p> <p><b>신발:</b> ①발등과 발 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등 신발류, ②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, 엑셀 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</p> <p><b>2. 마스크 착용 (시행 2020.06.12.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위기단계 '심각' 발령 시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후 운행하여야 한다.</li> </ul> | <p>○ 운송사업자 처분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, 제85조제1항제21호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</li> <li>- 동법 시행령 [별표3] 위반내용 제26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[별표5] 위반내용 제18너목 과징금 처분</li> <li>- <b>(과징금)</b> 1차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3일, 2차 과징금 15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</li> </ul> <p>○ 운수종사자 처분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8호, 법제94조제3항제4호, 동법 시행령 제4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</li> <li>- 동법시행령 [별표6] 위반행위 더목 과태료 처분</li> <li>- <b>(과태료)</b> 10만원</li> </ul> |

2020년 5월 27일

인천광역시

